대 전 광 역 시　중 구

구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jjunggu.go.kr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1,395호

2023. 2. 28.(화)

차　　례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안　내　문

▣ 공보의 게재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중구공보 발행일 : 매주 금요일(전자공보)　◎ 공보문건 접수마감 : 매주 목요일

※ **금요일이 휴일일 경우는 목요일에 발행**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다음호에 게재**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특별한 문건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문건은 게재할 수 없으니 각 실·과·소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 고시공고에 등재 후 시행문은 전자결재로 기획조정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는 전자공보로 구 홈페이지(민원·행정-행정자료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발행: 대전광역시 중구 / 편집: 기획조정실 언론홍보팀(우34939) 대전 중구 중앙로 100 ☎ 606-6163, Fax 606-7910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281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디지털 플랫폼 및 공공데이터 역량에 기반한 정책개발 역량 강화,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복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의 명칭을 기획홍보실로 변경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정책개발실을 신설함(안 제4조 및 제5조의2).

다. 회계정보과의 명칭을 회계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

라. 복지환경국에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함(안 제9조제1항).

마. 그 밖에 내용을 조직개편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개정 내용을 부칙에서 일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기획조정실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042-606-6122), FAX(042-606-7910),

이메일(nodame@korea.kr), 직접방문 등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기획조정실 담당자 오윤미(전화: 042-606-61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디지털 플랫폼 및 공공데이터 역량에 기반한 정책개발 역량 강화,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복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의 명칭을 기획홍보실로 변경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정책개발실을 신설함(안 제4조 및 제5조의2).

다. 회계정보과의 명칭을 회계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

라. 복지환경국에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함(안 제9조제1항).

마. 그 밖에 내용을 조직개편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개정내용을 부칙에서 일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23년 2~3월 중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2023년 2~3월 중

5) 성별영향평가: 2023년 2~3월 중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기획조정실)”을 “(기획홍보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정책개발실) 정책개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전략사업 기획·추진
2. 구정 주요 정책개발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
6. 통계에 관한 사항
7.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전산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회계정보과”를 “회계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회계정보과장”을 “정책개발실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복지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복지정책과	1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선정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동 장
노인장애인과	1	·매장·화장·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 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문화경제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4조(실・국의 설치) ----------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제5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혁신에 관한 사항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삭 제>
7.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삭 제>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빅데이터・공공데이터・통계에 관한 사항	<삭 제>
13.・14. (생 략)	13.・1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정책개발실) 정책개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전략사업 기획・추진
	2. 구정 주요 정책개발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
	6. 통계에 관한 사항
	7.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전산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자치행정국에 총무과, 회계정보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 략) 18.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9. 전산 운영에 관한 사항 20. ~ 33. (생 략)	제7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회계과----------. ② ----------. 1. ~ 17.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20. ~ 33. (현행과 같음)
제9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생 략)	제9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신설되는 실·과 등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공사비용 소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행정7급 오윤미(042-606-6122)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282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행정기구 개편 및 시급한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해 필수 인력을 증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인력을 증원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862명에서 876명으로 14명을 증원함(안 제2조).

나. 집행기관의 정원을 836명에서 848명으로 12명을 증원함(안 제2조제1호).

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6명에서 28명으로 2명을 증원함(안 제2조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기획조정실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042-606-6122), FAX(042-606-7910),

이메일(nodame@korea.kr), 직접방문 등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기획조정실 담당자 오윤미(전화: 042-606-61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행정기구 개편 및 시급한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해 필수 인력을 증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인력을 증원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862명에서 876명으로 14명을 증원함(안 제2조).

나. 집행기관의 정원을 836명에서 848명으로 12명을 증원함(안 제2조제1호).

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6명에서 28명으로 2명을 증원함(안 제2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등

나.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23년 2~3월 중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2023년 2~3월 중

5) 성별영향평가: 2023년 2~3월 중

6) 비용추계서: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862명”을 “876명”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836명”을 “848명”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26명”을 “2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와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76명					
정무직 계	1명					
구청장	1명	1명				
일반직 계	873명					
3급	1명	1명				
4급	7명	4명	1명	1명	1명	
5급	52명	26명	2명	5명	2명	17명
6급 이하	813명					
별정직 계	2명					
6급 상당 이하	2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86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83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와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62명					
정무직 계	1명					
구청장	1명	1명				
일반직 계	859명					
3급	1명	1명				
4급	7명	4명	1명	1명	1명	
5급	50명	24명	2명	5명	2명	17명
6급 이하	801명					
별정직 계	2명					
6급상당이하	2명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87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84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8명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와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76명					
정무직 계	--					
구청장	--	--				
일반직 계	873명					
3급	--	--				
4급	--	--	--	--	--	--
5급	52명	26명	--	--	--	--
6급 이하	813명					
별정직 계	--					
6급상당이하	--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

・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지방공무원 정원 14명 증원.

2. 비용추계의 전제: 공무원 봉급 최근 3개년 평균 인상률 1.3%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세출	○ 인건비	1,030,470	1,043,867	1,057,438	1,071,185	1,085,111	5,288,071
	소계(b)	1,030,470	1,043,867	1,057,438	1,071,185	1,085,111	5,288,071
□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	-	-	-	-	-
구비	자체수입 (지방세 등)	1,030,470	1,043,867	1,057,438	1,071,185	1,085,111	5,288,071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1,030,470	1,043,867	1,057,438	1,071,185	1,085,111	5,288,071

5. 부대의견: 비용추계의 전제, 예산상황 등에 따라 비용추계액 변동 가능

6. 작성자: 기획조정실 행정7급 오윤미(042-606-612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2023년 기준인건비 일반직 단가(73,605천원)를 기준으로 함